



기업의 성공적인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Solution

사업 연속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H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이 중처법의 가장 큰 쟁점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중처법의 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제 3 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 3 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왜 로펌에 의존하는 걸까?

중처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가장 크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에 많은 자문 비용을 쓰고 있는 추세이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그 의의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대사회의 중대재해 발생은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평판 손실에도 직결되어 사업의 중단**으로 연결되고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기업에 **재무·비재무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의 요소가 되기도 하기에 기업은 비즈니스 전(全) 영역에 걸쳐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한 총체적 대응 체계 확보를 통해 기업의 연속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법적 처벌만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기업의 안전문화와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판결 사례는?

1) 중처법 위반 1호, 건설사 O 파트너스 대표 유죄(판결선고, 2023.4.6.)

중처법 시행 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4 단독 김동원 판사는 O 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업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대비 안전보건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 중처법 위반 2호, 제조사 H 제강 법인 유죄(판결선고, 2023.4.26.)

두 번째 판결 사례로 H 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망한 근로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H 제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수년간 적발돼 여러 차례 동종 전과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는 법인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를 알면서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 왜 수년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을까?

안타까운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보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는 안전조치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과 돈, 그리고 인력을 줄이면서까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근로자(종사자)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항상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복되는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후진국형 사고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산업안전 감독의 체계를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본사·원청 중심의 기업 단위 감독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포했다.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 뿐만 아니라 기업 전사적 관점에서 형사처벌 사항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다. 수년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아래 다섯가지로 정리해보았다.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책임 부족

- 안전보건 확보 및 시스템 개편에 따르는 비용 부담
- 비용 부담이 초래한 최저가 위주의 악순환 경영체계

② 사업 연속성(BCM)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미흡

- 관리체계 간 중요도 미파악으로 인한 반복적 사고 발생
- 중대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전사적 관점의 위기관리 체계 구축 미흡

③ 중대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4 단계 관점별 차별화 대응 미비

- 의사결정권자 부재 시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파악 필요
- 초기 대응/보고 프로세스 및 One-Voice 소통 미흡

④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제도 마련 미흡

- 도급/용역사별 안전보건 수준 평가 미흡
- 반복되는 최저가 입찰제 지향으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 확보 미흡

⑤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대비/훈련 미흡

- 제 3자 전문기관을 통한 감사(Audit)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 필요
- 각 사업장별 체크리스트 개발 및 준법/적법성 완성도 제고 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까?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2. 사업 연속성(BCM)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3. 중대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4 단계 관점별 대응체계 구축

4.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제도 마련

5.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대비 및 훈련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사업주 또는 최고경영자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임직원 행동양식에 반영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예방 인식 내재화 및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는 중대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임직원의 중대재해 예방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수립했는가?
-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은 구성했는가?
-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은 마련했는가?

기업은 전사 차원의 체계적 위기대응을 위한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교육 등으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은 매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사업 연속성(BCM)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비상상황 발생 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의사결정 및 초기대응 절차일 것이다.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중대재해를 맞닥뜨리게 될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기업은 늘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긴장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며, 경영진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다.



- 사업 연속성(BCM)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
- 본사/지역본부/해외법인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
- 식별된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예방 및 모니터링하는가?

기업에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 또는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연속성관리의 기준을 사전에 정의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상황을 전파하고 사업연속성관리시스템(BCMS)을 가동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및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3. 중대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4 단계 관점별 대응체계 구축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령(중처법/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제적인 예방 관점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수사/재판 등 Full Process 관점에서의 PDCA(Plan-Do-Check-Act) Cycle 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예방단계: 사업장별 3P 정책(Policy), 조직(People), 절차(Process) 마련
- 대비단계: 매뉴얼, 지침 마련 및 지속적 점검을 통한 개선/모의훈련 등
- 대응단계: 신속한 초기대응 및 보고/소통체계 One-Voice 마련
- 수습/복구단계: 사후관리, 행정절차 프로세스 검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시스템 가동 유관 부서에서는 중대재해 가동에 필요한 제 3 자에 대한 인력 Pool 및 비상 연락망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어느 상황에서나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4.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제도 마련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어느정도 충족되어 있는 도급·용역·위탁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도급/수급인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자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급/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가?
- 도급/수급인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이행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도급/수급인은 안전보건 총괄관리 조직을 구성하였는가?
- 도급/수급인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가?
- 도급/수급인은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이러한 평가 결과는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파악과 현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다. 이는 도급/수급인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류·형성되어 시장에 형성될 것이다.

5.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대비 및 훈련

기업은 성공적인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연속성관리 시스템(BCMS)과 연계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제 3의 전문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특성에 맞는 진단영역을 확정하고 주요 사업장별 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저감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
- 사업장별 회복탄력성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
- 정기적/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가?

이는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Crisis & Resilience 체계의 안정적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론

성공적인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법규 지키기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리스크를 경감하는 전사적 차원의 통합 위기관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 보호 차원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차단하고 적시에 대응하여 사업의 연속성·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의 법적 처벌 및 사업중단 명령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평판과 리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의 예방/대비/대응/복구 4 단계의 단계별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은 줄어드는 대한민국 인구수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중대재해 예방을 선도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며, 현재

오류! 지정한 스타일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기관리체계의 취약점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여 기업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와 더불어 개선 및 보완점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법률 제 17907 호,2021.1.26.제정]
- 2022 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risk/solutions/strategic-and-crisis-risk/about-us.html/#02>,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Strategic&DX 홈페이지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